

제21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 참가신청서 PATINEX(PATent INformation Expo) 2025 Application Form

안녕하세요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은 다가오는 9월 18일, 19일 양일간 국제특허정보박람회 (PATINEX 2025)를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정보서비스 기업 대상으로 전시부스 참가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참가신청 방법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PATINEX2025 사무국 (02-2038-2227, patinex@teampiana.co.kr)

< 참가신청 안내사항 >

■ 참가신청 방법

- 👉 신청기간 : 1차) 6월 2일(월) ~ 6월 20일(금) / 2차) 6월 23(월) ~ 6월 30일(월)
- 👉 신청방법 : ①참가신청서, ②회사로고(CI), ③사업자 등록증을 이메일로 제출
- 👉 제출처 : patinex@teampiana.co.kr

■ 참가비 납부

- 👉 납부기한 : 1차) 2025. 6. 27.(금) 까지 / 2차) 2025. 7. 7(월) 까지
-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참가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제출
-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4-383757
- 👉 예금주 : 한국특허정보원

■ 유의사항

- 👉 1차 모집기간에 참가신청 시, 부스 위치 우선 선점 혜택 제공(이메일 접수 순)
- 👉 모집기업수가 한정됨에 따라 신청기간 내 기업 모집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서비스발표의 경우, 부스신청을 해야 신청 가능
- 👉 서비스발표의 경우 횟수 제한이 있어 이메일 접수 순에 따라 모집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서비스 발표 시간은 추첨을 통해서 결정)
- 👉 정해진 기한 내에 참가비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참가신청은 취소될 수 있음

1 기업정보

기업명	국문	
	영문	
주소지		
홈페이지		
서비스분야 (해당분야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input type="checkbox"/> IP조사·분석 <input type="checkbox"/> IP기술사업화 <input type="checkbox"/> IP번역 <input type="checkbox"/> IP기타 <input type="checkbox"/> IP정보·기술 <input type="checkbox"/> IP법률·대리 <input type="checkbox"/> IP컨설팅
기업 소개	국문 (200자 이내)	
	영문 (200자 이내)	

2 담당자 정보

담당자 성명		사무실 연락처	
부서		휴대전화	
직위(직책)		이메일	

3 전시품목(서비스)

품목명(서비스명)	
품목명(서비스명)	
품목명(서비스명)	

4 신청내역

품목명(서비스명)		단가	신청수량	신청금액
전시 부스	플래티넘	1,000만원/부스	()부스	만원
	골드	700만원/부스	()부스	만원
	실버	300만원/부스	()부스	만원
서비스발표		200만원/회	()회	만원
합계				만원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골드/실버 전시 참가비에 대해 20% 할인 제공

위와 같이 제21회 국제특허정보박람회(PATINEX)에 참가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담당자 : (인)

대표자 : (인)

붙임1

PATINEX 2025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 ① "참가자"는 본 행사의 전시 및 서비스발표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 ② "전시"는 "PATINEX 2025 전시장 내 전시부스 운영"을 말한다.
- ③ "서비스발표"는 "PATINEX 2025 컨퍼런스장 내 서비스발표"를 말한다.
- ④ "주관자"는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36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특허정보원"을 말한다.

제2조 전시부스 배정

- ① 주관자는 참가 신청 순서, 참가비 납입순서, 희망위치, 희망 발표시간, 참가 규모 등 사전에 안내한 내용 및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사무국에서 전시장 내 각 참가자의 위치, 서비스 발표자의 발표순서를 배정하며,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참가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참가신청 및 계약

- ①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참가비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전시 및 서비스발표 참가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서비스발표 시간대가 마감된 경우,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발표 내용이 행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주관자는 전시 및 서비스발표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비 등 기 납부금을 반환할 수 있다.
- ② 참가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등 제반 제출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를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책임을 진다.

제4조 참가자 납입조건

- ① 참가자는 본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자에게 제출한 후 주관사 및 대행사의 안내에 따라 참가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참가자가 참가비 등 전시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지정된 기간 내 납부하지 않거나 별도의 사전고지 없이 미납할 경우, 주관자는 완납까지 참가를 유보하거나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설치 및 철거

①설치 및 철거는 주관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참가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관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전시장 관리

①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참가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사전 동의 없이 직매 행위를 하는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참가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참가자는 주관자의 서면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 또는 서비스발표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⑤참가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 칠, 접착제 등으로 원상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관자의 원상복구 요청 등에 의해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⑥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품목, 전시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보험, 보안 및 안전

①주관자는 참가자 및 참관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롯데호텔 월드 규정에 의거)를 취한다.

②참가자는 전시기간과 철거기간 중 배당면적 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②참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및 기타 사고를 발생시켜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에는 참가자가 전적인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참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8조 방화규칙

- ① 전시장 내 참가자가 반입하는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②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해약 및 위약금

- ① 참가자가 배정된 전시부스 또는 서비스발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참가자가 주관자의 동의없이 참가를 취소(포기)한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② 참가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2025년 7월 14일까지 취소 : 참가비 전액에 대해 환불
 - 2025년 7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취소 :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25년 8월 16일부터 9월 17까지 취소 : 원칙적으로 전시 및 서비스발표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이 기간에 참가를 취소(포기)할 경우 참가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

제10조 전시 취소 또는 변경

- ① 주관자가 PATINEX 2025 행사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주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단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참가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시 사무국에서 전시회 개최는 온라인으로 변경될 수 있음

제11조 보충규정

- ①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보충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참가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①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관자와 참가자간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쟁은 대전지역 소재 대한상사중재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해결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붙임2

지식재산 서비스 분야 분류표

분류	서비스 예시
<p>IP정보조사·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기술조사 • 특허맵 작성 • 기술동향 분석 • 무효자료 조사·분석 • 분쟁대응자료 조사·분석
<p>IP기술사업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가치평가(특허등급평가) • 기술성·시장성 평가 • 지식재산권 및 기술 거래 • IP사업화 지원
<p>IP번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세서 번역 • 기술 문서 번역 • IP 관련 서신 및 문헌 번역 • IP 관련 계약자료 번역 등 • IP 소송자료 번역
<p>IP정보기술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시스템 개발 • IP 시스템 유지보수 • IP 정보활용 서비스 개발 • IP 데이터베이스 구축·정비 • IP 데이터베이스 제공
<p>IP법률대리 (출원 및 분쟁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 법률자문 및 상담 • 출원 및 등록 관리 • 분쟁 및 소송 대리 • 명세서 작성 • 보정 및 의견서 작성
<p>IP컨설팅 (교육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전략 수립 • IP경영 컨설팅 • 사업·경영 환경분석 • 시나리오 설계 • IP교육 제공